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1. 제정 이유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위한 절차와 수수료 납부 등 세부내용을 규정하도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 2021. 5. 27. 시행)됨에 따라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및 그 밖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절차 등(안 제4조 내지 제11조, 별지서식)

- 1) 기능등급 확인증을 개인별 등급증명서와 사업장별 보유증명서로 구분함
- 2) 기능등급 확인증 발급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 및 발급 절차와 정정신청 절차 등을 규정

나. 사업주 등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신청 사유(안 제12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업주와 발주자의 발급신청 사유를 규정

다.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수수료 기준(안 제13조, 별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수수료 기준을 마련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설 조문, 별첨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등을 말한다.
2. “통합 직종“이란 건설공사의 세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특정 기능이 필요한 직종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중노임단가 및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에 적용하는 직종 중 직무의 내용이 유사한 것들을 통합한 직종을 말한다.
3. “현장경력“이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퇴직공제의 신고일수와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고용보험의 신고일수 및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일수 등을 합산한 일수를 말한다.

4. “자격“ 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발급한 인정기능사 및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 등을 말한다.
5. “교육·훈련“ 이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교육·훈련과 법 제7조제1항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고등학교의 건설관련 분야의 교육과정 및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훈련 과정 등을 말한다.
6. “포상“ 이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하는 기능경기대회 등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대회에서 입상 또는 수상한 것을 말한다.
7. “총 환산 경력연수“ 란 현장경력에 자격,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환산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등급 부여의 기준이 되는 연수를 말한다.
8. “수탁기관“이란 법 7조의4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능등급확인증의 종류) 기능등급확인증은 개인별로 기능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이하 “등급증명서”라

한다)와 건설 사업장에 소속된 기능등급 보유자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이하 “보유증명서”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5조(등급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별지제1호서식의 등급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에 따른 등급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등급증명서에 발급신청자가 선택하는 바에 따라 세부이력을 포함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6조(보유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별지제3호서식의 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발주자는 별지제4호서식에 따른 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동의서 또는 재직 확인서류(사회보험 자격취득 이력 사항 등 근무처 또는 경력사항을 확인해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급보유자의 동의를 얻어 등급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9호서식의 발급 동의서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등급보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발급 동의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보유증명서의 제출) 건설공사의 발주자(원하수급 관계의 원수급인을 포함한다)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에게 수탁기관이 발급

하는 보유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자료조회 요청)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주 또는 영 제4조의4에 따른 기관·법인·단체 등에 사실관계의 확인 또는 자료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수탁기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급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관련 사업주 등에 대한 사실관계확인 또는 자료조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등급증명서의 정정신청 등) ① 건설근로자가 수탁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등급증명서의 경력사항에 대하여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5호서식에 따라 정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조의4에 따라 수탁기관이 제공받은 정보는 정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직종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 표시되어 본인의 정확한 직종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근로직종 확인을 받아 수탁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반영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사업주 등에 대한 사실관계확인 또는 자료조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관리) 수탁기관은 제9조에 따라 발급한 등급증명서와 보유증명서에 대하여 별지제7호서식의 등급증명서 발급대장 및 별지제8호서식의 보유증명서 발급대장에 발급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관리하는 경우 발급대장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주 등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신청 사유) 법 제7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제6조제2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등급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유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3. 발주자가 계약중이거나 계약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보유중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유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수수료) ① 법 제7조의5제2항과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1에 따른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발급수수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등급확인증의 정정신청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정정신청은 이 규칙의 시행 이후 경력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신청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수수료(제1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발급 수수료	비 고
건설근로자 등급증명서	2,000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4,000	

비고: 수수료 금액은 방문 발급신청 기준이며, 인터넷 발급신청 시 50% 감액

[별표 2]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수수료 감면 사유(제13조제2항 관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제9조에 따라 등급보유자 본인의 등급증명서를 처음으로 발급받는 사람
6. 제10조에 따른 정정 및 추가신청으로 등급증명서 내용이 수정된 후 처음으로 발급받는 사람
7. 그 밖에 수탁기관의 장이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발급번호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1. 성 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직 종 :

4. 등 급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 및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등급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발 급 일 :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유의 사항	1. 등급증명서의 표시사항은 발급신청 직전월말까지 신고된 기준으로 이력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 등급증명서는 타인에게 양도·양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세부이력)

(앞쪽)

1.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2. 기능등급

직 종	등 급	총 환산경력연수

3. 이력사항 (최근 순)

○ 퇴직공제

공사명	업체명	근로연월	근로일수	신고직종	통합직종

○ 고용보험 (일용)

공사명	업체명	근로연월	근로일수	신고직종	통합직종

○ 고용보험 (상용)

공사명	업체명	근무 시작월	근무 종료월	신고직종	통합직종

(뒷쪽)

○ 자격

자격명	등록번호	취득일자	발급기관	통합직종

○ 교육·훈련

과정명	기 간	교육·훈련기관	통합직종

○ 기능경기대회 입·포상

대회명	종 목	순 위	수여일자	수여기관	통합직종

○ 기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 및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등급증명서의 세부이력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근로자 또는 사업주 등)	성명(상호 또는 기관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발급대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발급 직종		
	세부이력 [] 포함 [] 미포함		
신청부수	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 및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등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발급 동의서(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발주자만 첨부합니다) 2. 동의자의 신분증 사본(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발주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①란의 발급 직종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별표1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경력 등 조회	→	검토 및 결재	→	증명서 발급
신청인		수탁기관		관련 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사업주 또는 발주자)	구분 [] 사업주 [] 발주자		
	상호 또는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전화번호	
신청사항	①사업장	[] 전체 사업장	[] 특정 사업장
	②근로자	[] 전체 근로자	[] 전체 근로자
	③직종	[] 전체 직종	[] 특정 직종 (직종 :)
	④등급	[] 전체 등급	[] 특정 등급 (등급 :)
	제출처	부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 및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⑤특정 사업장			⑥특정 근로자			
연번	공사명	발주자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종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특정 사업장			특정 근로자			
연번	공사명	발주자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종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첨부서류	발급 동의서(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발주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발급 신청하는 경우 법인인감(사용인감을 포함합니다)을 날인하고, 신청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보유증명서의 기재사항은 건설근로자의 발급 동의 및 고용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3. ①란의 사업장 범위는 전체 또는 특정 사업장을 선택(√)하고, 미선택 시 전체 사업장 범위로 발급됩니다.
4. ①란의 특정 사업장을 선택할 시, ⑤란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정보를 적습니다.
5. ②란의 근로자 범위는 전체 또는 특정 근로자를 선택(√)하고, 미선택 시 모든 건설근로자으로 발급됩니다.
6. ②란의 특정 근로자를 선택할 시, ⑥란에 신청하고자 하는 특정 근로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7. ③란의 직종 범위는 전체 또는 특정 직종을 선택(√)하고, 특정 직종을 선택할 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별표1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8. ④란의 등급 범위는 전체 또는 특정 등급을 선택(√)하고, 미선택 시 모든 등급의 건설근로자으로 발급됩니다.
9. ④란의 특정 등급을 선택할 시, 신청하고자 하는 등급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정정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①정정사항	정정 전 내용	정정 후 내용	정정 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 및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등급증명서의 경력사항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정정신청 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유의사항

- ①란은 등급증명서에 표시된 기재사항(직종 등)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 직종 정정 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별표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정정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근로직종확인서

※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건설근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확인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사항

공사명	고용보험 관리번호	①근로연월	근로일수	직종	
				기존 신고직종	②근로 직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 및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공사에서 근로한 직종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 고용보험으로 신고된 내용 중 직종이 불명확한 경력 사항에 대해 직종 확인을 통해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사용자) 확인을 받은 근로직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의 경우 ①란에 고용보험 취득일자를 기재합니다.
- ②란의 근로 직종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별표1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 여러 건의 근로직종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확인사항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	-----------------	------	-----

210mm×297mm(백상지 80g/㎡)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대장

[illegible]210mm×297mm(백상지 80g/ m²)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대장

[illegible]210mm×297mm(백상지 80g/ m²)

발급 동의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동의자 (건설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동의내용	①발급 직종	등급증명서 세부이력 [] 포함 [] 미포함		
발급 동의 사업주 등	상호 또는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전화번호		
	공사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 및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본인은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을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동의자의 신분증 사본
------	-------------

유의사항

①란의 발급 직종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별표1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3539